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전재수・이기헌・허 영

신영대 · 김정호 · 민홍철

김태선 • 복기왕 • 위성곤

이학영ㆍ허성무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「법원조직법」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 어,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(안 제1조, 제2조제1항 및 제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6호),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3호),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22호), 「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21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1019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7호), 「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020호)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지방법원"을 "지방법원·해사전문법원"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지방법원"을 "지방법원·해사전문법원"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법원 본원(本院) 합의부"를 "지방법원 본원(本院)·해사전문법원 합의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지방법원</u> 및	제1조(목적)지방법원		
그 지원(支院)에서 소액(少額)	·해사전문법원		
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			
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			
「민사소송법」에 대한 특례를			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:	,		
제2조(적용 범위 등) ① 이 법은	제2조(적용 범위 등) ①		
<u>지방법원</u> 및 그 지원의 관할사	지방법원ㆍ해사전문법원		
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			
민사사건(이하 "소액사건"이라			
한다)에 적용한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상고 및 재항고) 소액사건	제3조(상고 및 재항고)		
에 대한 <u>지방법원 본원(本院)</u>	지방법원 본원(本		
<u>합의부</u> 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	院)·해사전문법원 합의부		
•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에만 대법원에 상고(上告) 또는			
재항고(再抗告)를 할 수 있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